

## 제13장 경쟁

### 제13.1조 목적

이 장은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하는 법과 규정의 채택 및 유지를 통하여, 그리고 당사자들 간 경쟁법과 규정의 발전과 이행에 관한 지역적 협력을 통하여,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경제적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의 추구는 당사자들 간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당사자들이 이 협정의 혜택을 확보하도록 도울 것이다.

### 제13.2조 기본 원칙

1. 각 당사자는 이 장의 목적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 장을 이행한다.
2. 이 장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며, 당사자들은 다음을 인정한다.
  - 가. 각 당사자가 자신의 경쟁법, 규정 및 정책을 개발, 수립, 관리 및 집행할 주권적 권리, 그리고
  - 나. 경쟁법 및 정책 분야에서 당사자들 간 존재하는 역량 및 발전 수준의 중대한 차이

### 제13.3조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sup>1</sup>

---

<sup>1</sup> 이 조는 다음을 조건으로 한다.

가. 부속서 13-가[브루나이다루살람에 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제13.4조(협

1. 각 당사자는 반경쟁적 행위<sup>2</sup>를 금지하는 경쟁법과 규정을 채택 또는 유지하고, 그러한 법과 규정을 이에 따라 집행한다.
2. 각 당사자는 자신의 경쟁법과 규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복수의 당국을 설립하거나 유지한다.
3. 각 당사자는 자신의 경쟁법과 규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하나 또는 복수의 당국이 의사 결정을 하는 데에 독립성을 보장한다.
4. 각 당사자는 국적에 기초하여 차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경쟁법과 규정을 적용하고 집행한다.
5. 각 당사자는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실체에 대하여 그들의 소유권과 관계없이 자신의 경쟁법과 규정을 적용한다. 각 당사자의 경쟁법과 규정의 적용으로부터의 모든 배제나 면제는 투명하고, 공공정책 또는 공익에 근거한다.
6. 각 당사자는 내부 운영 절차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경쟁법과 규정, 그리고 그러한 법과 규정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발행 지침을 공중이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7. 각 당사자는 다음을 조건으로 자신의 경쟁법과 규정에 따라 제제나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최종 결정이나 명령의 근거,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불복청구를 공개한다.

가. 1) 자신의 법과 규정

2) 비밀 정보를 보호할 필요성, 또는

---

력)의 적용]

- 나. 부속서 13-나[감보디아에 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 다. 부속서 13-다[라오인민민주공화국에 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그리고
- 라. 부속서 13-라[미얀마에 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sup>2</sup> 예시로서 반경쟁적 합의, 지배적 지위의 남용, 그리고 반경쟁적 인수합병을 포함할 수 있다.

3) 공공정책 또는 공익에 근거하여 정보를 보호할 필요성, 그리고

나. 가호1목부터 3목까지에서 언급된 어떠한 사유로 최종 결정이나 명령의 변경

8. 각 당사자는 모든 인이나 실체에게 자신의 경쟁법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나 시정조치가 부과되기 전에, 그러한 인이나 실체에게 그 당사자의 경쟁법 또는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이유와(가능한 경우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보장한다.

9. 각 당사자는 비밀 정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어떠한 변경을 조건으로 자신의 경쟁법과 규정에 따라 제재나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모든 최종 결정이나 명령의 근거,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불복청구를, 그 제재나 시정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인 또는 실체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sup>3</sup>

10. 각 당사자는 자신의 경쟁법과 규정에 따라 제재나 시정조치의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인이나 실체가 그 제재나 시정조치에 대하여 독립적인 재심 또는 불복청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11. 각 당사자는 경쟁 사건의 처리에서 적시성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 제13.4조

### 협력<sup>4</sup>

---

<sup>3</sup> 이 항은 형사재판에서의 배심원 평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sup>4</sup> 이 조는 다음을 조건으로 한다.

- 가. 부속서 13-가[브루나이다루살람에 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 나. 부속서 13-나[캄보디아에 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 다. 부속서 13-다[라오인민민주공화국에 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그리고
- 라. 부속서 13-라[미얀마에 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당사자들은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들 각자의 경쟁 당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자들은 그들 각자의 법, 규정 및 중요한 이익과 양립 가능한 방식으로 그리고 그들 각자의 이용 가능한 자원 내에서, 그들 각자의 경쟁 당국을 통하여 경쟁법 집행에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협력할 수 있다. 그러한 협력의 형태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중요한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기는 자신의 경쟁법 집행 활동을,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그 다른 당사자에 통보하는 것<sup>5</sup>
- 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당사자의 중요한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쟁법 집행과 관련한 어떠한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당사자들 간 논의하는 것
- 다. 요청이 있는 경우, 이해를 증진하고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사자들 간 정보를 교환하는 것, 그리고
- 라. 요청이 있는 경우, 동일하거나 관련된 반경쟁적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들 간 집행 조치를 조정하는 것

### 제13.5조

#### 정보의 비밀유지

- 1. 이 장은 당사자의 법, 규정 및 중요한 이익에 반하는 정보의 공유를 그 당사자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 2. 당사자가 이 장에 따라 비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당사자는 피요청당사자에게 다음을 통보한다.

- 가. 요청의 목적

---

<sup>5</sup> 이 호에 따른 일본 경쟁 당국에 대한 통보의 경우, 그 통보는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확인은 해당 당사자들의 경쟁 당국 간 관련 의사소통 후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나. 요청된 정보의 사용 목적, 그리고
  - 다. 정보의 비밀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피요청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목적으로 그 정보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는 요청 당사자의 모든 법 또는 규정
3. 어떠한 당사자들 간 비밀정보의 공유 및 그러한 정보의 사용은 해당 당사자들에 의하여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다.
4. 이 장에 따라 공유된 정보가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공유된 경우, 그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자신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 가. 제공받은 정보의 비밀을 유지한다.
  - 나.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요청 시에 공개한 목적을 위해서만 제공받은 정보를 사용한다.
  - 다. 그러한 정보가 그 정보를 제공받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외교적 경로나 해당 당사자들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립된 그 밖의 경로를 통하여 형사 절차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되지 않는 한, 제공받은 정보를 법원이나 판사가 수행하는 형사 절차에서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라. 그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에 의하여 승인되지 않은 그 밖의 당국, 실체 또는 인에게 제공받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 마.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요구하는 그 밖의 모든 조건을 준수한다.

### 제13.6조

#### 기술 협력 및 역량 강화

당사자들은 당사자들 자원의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경쟁 정책 개발과 경쟁법 집행을 강화

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협력 활동에 관하여, 다자적으로 또는 양자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그들의 공동의 관심분야임을 합의한다. 기술 협력 활동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경쟁법과 정책의 개발 및 이행에 관한 관련 경험 및 비밀이 아닌 정보의 공유
- 나. 경쟁법과 정책에 관한 자문가 및 전문가 교류
- 다. 훈련 목적의 경쟁 당국 공무원 교류
- 라. 경쟁주장 프로그램에 대한 경쟁 당국 공무원의 참여, 그리고
- 마.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그 밖의 활동

### **제13.7조** **소비자 보호**

1. 당사자들은 이 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비자 보호 관련 사안에 관한 당사자들 간 협력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법 및 그러한 법의 집행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각 당사자는 무역에서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관행이나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법 또는 규정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3. 각 당사자는 또한 소비자 피해구제 메커니즘에 관한 인식 및 접근성 제고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4. 당사자들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상호 관심 사안에 관하여 협력할 수 있다. 그러한 협력은 당사자들 각자의 법 및 규정과 양립 가능한 방식으로 그리고 그들의 이용 가능한 자원 안에서 수행된다.

## 제13.8조

### 협의를

당사자들 간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또는 이 장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당사자는 요청 당사자와 협의를 개시한다. 그 요청에서, 요청 당사자는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안이 해당 당사자들 간 무역 또는 투자를 포함하여 자신의 중요한 이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적시한다. 피요청당사자는 요청 당사자의 우려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고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 제13.9조

### 분쟁해결절차의 비적용

어떠한 당사자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제19장(분쟁해결)에 따른 분쟁 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